

창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나54006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등]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2나54006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가단12486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 항소인 1. A

2. B

변론 종결 2024. 3. 14.

판결 선고 2024. 4. 18.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가단12486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 A은 원고에게 20,695,012원 및 그 중 20,493,835원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¹⁾.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20,695,01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695,0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 1) 원고는 2016. 3. 18. 피고 A과 보증금액 25,500,000원, 대출예정금액 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C은행 김해시지부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20. 12. 19. 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 3) 원고는 2021. 1. 21. C은행 김해시지부에 20,531,385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중 37,550원을 회수하였으며, 법적절차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 중 회수하지 못한 비용이 201,177원이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합계 20,695,012원(= 대위변제금 20,531,385원 - 회수금 37,550원 + 법적절차비용 등 201,177원)이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부동산 매매

- 1) 피고 A은 2014. 8.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3,5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A은 2020. 12. 28.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E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2021. 1. 15.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2,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L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관련 회생 사건의 경과

1) 피고 A은 2020. 12. 31. 창원지방법원 2020개회2014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이하 '회생사건'이라 한다), 2021. 5. 17.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2021. 1. 25.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2021. 11. 8. 인가 전 폐지결정이 내려졌다.

2) 위 폐지결정에 대하여 피고 A이 창원지방법원 2021라10534호로 즉시항고하였고, 항고심 법원은 항고 이후 보정명령 사항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2022. 5. 13.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3) 피고 A에 대한 회생절차가 재개되었는데, 다시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2022. 12. 5. 인가 전 폐지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A은 2022. 12. 14. 창원지방법원 2022라10582호로 즉시항고하였다. 피고 A은 항고심 계속 중인 2023. 9. 11.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 A은 2023. 10. 18. 창원지방법원 2023개회10052호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회생사건에서 피고 A에 대하여 2021. 5. 17.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인바, 이 사건 소는 2021. 12. 3.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속 중에 피고 A이 2023. 9. 11. 항고를 취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603조 제1항],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603조 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제603조 제4항),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사건에서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였고, 2021. 5. 26. 채권액수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원고의 채권이 부인되거나 이의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및 피고 A과 C은행 김해시지부 사이의 대출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의 이자 연체로 2020. 12.

1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에 원고가 2021. 1. 21.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C은행 김해시지부에 20,531,385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A의 무자력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L조합 M지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으로 162,356,766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239,243,72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험계약반환금(N)	399,037
보험계약반환금(0)	8,029
보험계약반환금(0)	9,700
자동차(S)	1,940,000
임차보증금(경남 김해시 P)	10,000,000
이 사건 부동산	150,000,000
계	162,356,766

김해세무서	2020. 12. 7.자 현재 부가가치세	751,570
북부산세무서	2020. 12. 7.자 현재 부가가치세	584,440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2020. 4.~2020. 7.자 건강보험료	1,160,040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2020. 6.~2020. 7.자 연금보험료	296,470
J(주)	2018. 4. 27.자 대여금	30,593,703
K(주)	2019. 4. 24.자 자동차 구입자금	24,252,354
Q(주)	2015. 12. 4.자 신용카드대금	761,766
C주식회사	2016. 3. 18.자 대여금	24,000,000
C주식회사	2017. 6. 28.자 대여금	32,400,000

김해세무서	2020. 12. 7.자 현재 부가가치세	751,570
C주식회사	2016. 3. 15.자 신용카드대금	2,647,682
(주)I	2016. 4. 19.자 신용카드대금	6,097,288
F(주)	2017. 10. 11.자 대여금	16,003,661
G(주)	2018. 7. 24.자 대여금	3,027,990
G(주)	2018. 8. 29.자 대여금	300,150
(주)H	2019. 4. 25.자 대여금	11,366,606
(주)E	2020. 12. 28. 기준 대여금 잔액	85,000,000
계		239,243,720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이 피고 B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피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21.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E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는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으로 20,695,012원을 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020. 12. 28. 기준 150,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며, E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020. 12. 28. 기준 피담보채무액은 85,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65,000,000원(= 부동산 가액 150,000,0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5,000,000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0,695,012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65,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20,695,0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0,695,0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장욱

판사이정현

판사구민경

별지

1) 원고는 2024. 3. 11.자 준비서면에서 지연손해금을 일부 감축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이 2021. 12. 13.로 2021. 12. 31. 이전이므로 착오에 기한 것으로 선택한다.